

자가검사업체의 지정요건(제13조제1항 관련)

1. 자가검사대상품목에 대하여 성능 및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보증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것에 따라 생산 및 검사가 수행되고 있음이 검증되어야 한다
2. 검사대상품목에 대하여 성능 및 품질에 대한 검사·측정·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.
3. 자가검사대상품목의 성능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검사원을 보유하여야 한다.
 - 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항공·일반기계·정밀기계·계량·원동기검사·금속·공정관리·품질관리·화공·전자·공업계기·전파통신 및 무선설비에 관한 기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얻은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6개월 이상 해당품목의 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았거나 해당품목의 생산공장에서 2년 이상 해당품목의 생산 또는 검사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
 - 2) 외국에서 해당품목에 대한 검사원의 자격을 얻은 자로서 해당품목의 생산공장에서 2년 이상 생산 또는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
 - 3) 이공계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검사기관에서 해당품목의 연구나 검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
4. 자가검사대상품목을 생산하여 3회 이상 연속적으로 합격하여야 한다.